

중국 외국투자자의 중국내 기업 M&A 규정 공포

상무부 등 6개 부처, 이전 잠정규정 수정개편

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10일 '외국투자자의 중국 境内기업 M&A 에 관한 규정' 을 6개 부처와 공동으로 공포하였다. 동 규정은 2006년 9월8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. 이 규정은 이전의 잠정규정을 수정, 개편한 것이다.

이 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, 규정 적용대상은 외국 투자자가 중국 境内에 위치한 非外商투자기업의 주식을 구매하거나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피 M&A기업이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된 경우, 혹은 외국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는 경우, 혹은 외국 투자자가 경내기업의 자산을 구매하여 그 자산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된다.(제2조)

또 외국투자자는 '外商투자산업 지도목록' 에서 단독투자 경영을 금지한 산업에 대해 외국 투자자의 피M&A기업 지분 100% 매입을 금지하며, 상기 '지도목록' 에서 중국측의 지배주주를 규정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M&A 이후에도 중국 지배원칙이 유지되어야 하며, 외국 투자자의 경영을 금지한 산업에 대해서는 M&A를 할 수 없다.(제4조)

이와함께 M&A시 대상기업의 국유자산 양도가 요구되거나, 상장회사의 국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 또한 境内 상장사를 합병할 경우, '외국 투자자의 상장사 전략투자 관리 방법' 의 규정에 따라 증권감독관리 기구에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.(제5, 6조)

그리고 M&A후 피인수합병 기업의 등록자본금 중 외국지분이 25% 이상인 경우,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다.(제9조)

M&A시, 중국내 중점산업 혹은 국가 경제 안전

요인에 영향을 미치거나, 유명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거나, 중국의 전통적 브랜드를 보유하게 되면 상무부에 신고해야 한다.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, 상무부는 거래를 중지시키거나, 해당 지분 및 자산 양도 등을 명령할 수 있다.(제12조)

이어 M&A후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 상한선(제19조)은 △등록자본 210만U\$ 이하의 경우, 투자총액이 등록자본 10/7을 초과할 수 없으며, △등록자본 210-500만U\$는 등록자본의 2배 초과가 불가하며, △500-1200만U\$는 2.5배를 초과할 수 없고 △1200만U\$이상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.

특히, 동 규정 제5장(반독점 심사)에서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, 외국투자자는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 즉, M&A 당사자 한쪽의 당해년도 중국시장에서의 매출액이 15억(약 1.89억 U\$) 이상인 경우, 1년 이내 M&A한 관련기업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, M&A 당사자 한쪽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%인 경우, M&A 결과 중국시장 점유율이 25%인 경우 등이다.(제51조)

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, M&A후 시장 점유율이 커지거나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, 중국 境内기업, 관련 부처, 관련 협회는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해당 외국 투자자의 보고요구를 청원할 수 있다.(제51조).

그리고,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된 경우에는 90일 이내 당사자, 보고 청원자 등을 소집하여 청문회를 개최하며, 법에 의거 해당 M&A 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.(제52조)